#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 분양광고 (광고일 : 2022년 01월 06일)

I—IA NUL CHE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는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전 필히 예약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람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 검수 및 공급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나, 방문 가능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임(해당 날짜 시간외에는 방문 불가)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1인만 입장이 가능함(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은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함에 따라 미 입장고객을 위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661-0029)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청약 신청 시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코로나19 대응 내용은 향후 변동)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1.06) 기준임**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1.05)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자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함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05)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1호 나목 분양분이 100실 미만이므로 10%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되며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함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항에 따라 100실 미만의 건축물로서 전매가 가능 함.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②항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임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2022-건축과-분양신고-1호(2022.01.05)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3441호(2021.02.26)를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1차~3차 변경승인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17652, 33711, 55055)**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7-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행위탁자 - 원앤드파트너스(주) / 시행수탁자 - KB부동산신탁(주)
■ **분양사업자 :** KB부동산신탁(주) / 시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 분양대행사 : (주)미래인 ■ **신탁업자(시행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KB부동산신탁(주)
■ **공급대상물 :**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2,987㎡ 중 오피스텔 : 781.4388㎡ • 건축물 연면적 : 147,179.3158㎡ 중 오피스텔 : 10,447.7762㎡ • 건축물 층별 용도 : 주차장(지하5층 ~ 지하1층) / 아파트(지상3층 ~ 지상49층) / 오피스텔(지상3층 ~ 지상28층) / 피난안전구역(지상21층)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49층, 5개동 중 오피스텔 총 50실 • 주차대수 : 오피스텔 74대[법정(50대) 대비 148.0%]

■ **내진설계 등급 :**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구분 | 등급 |
|---|---|
| 내진중요도 I | VII-0.215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입주예정일 :** 2025년 0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 실)

| 타입 | 공급호실(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84OA | 50 | 84.4875 | 41.1655 | 14.2644 | 69.0380 | 208.9554 | 15.6288 |

※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에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호실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은 하지 않음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전광역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자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함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 타입 | 공급호실(수) | 공급 유형별 | | | 비고 |
|---|---|---|---|---|---|
| | | 거주자 우선공급 호실(수) | 일반공급 호실(수) | 계 | |
| 84OA | 50 | 5 | 45 | 50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분양신고일(2022.01.05.)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거주자 우선공급 호실을 신청하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호실 신청자와 함께 추첨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VAT 포함)

| 타입 | 라인 | 층 | 호실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50%) | | | | | 잔금(40%) |
|---|---|---|---|---|---|---|---|---|---|---|---|---|---|---|
| | | | | 대지비 | 건물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
| | | | | | | | | | 2022.07.11 | 2023.01.10 | 2024.02.12 | 2024.06.10 | 2024.11.11 | |
| 84OA | 201동 4호, 5호 | 3층 | 2 | 114,974,263 | 250,023,397 | 25,002,340 | 390,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156,000,000 |
| | | 4~5층 | 4 | 116,153,486 | 252,587,740 | 25,258,774 | 394,0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57,600,000 |
| | | 6~10층 | 10 | 118,806,738 | 258,357,511 | 25,835,751 | 403,0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161,200,000 |
| | | 11~20층 | 20 | 121,165,185 | 263,486,195 | 26,348,620 | 411,0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64,400,000 |
| | | 22~28층 | 14 | 123,818,437 | 269,255,966 | 26,925,597 | 420,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168,000,000 |

■ **오피스텔 공통사항**
- 본 분양대상 오피스텔 50실은 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급금액은 층,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됨 • 오피스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 됨 •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음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에,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의 10%를 대전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분양함 [분양신고일(2022.01.05)](대전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최초 분양광고일(2022.01.0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재외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함.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함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임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 일시 | 01월 11일(화) (09:00~17:30)(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 01월 14일(금) 16:00시 이후 | 01월 17일(월) (10:00~16: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
| 장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8)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람.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함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이 부산은행 전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함

■ **청약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청약신청→'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주택명 및 타입 선택→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연락처등(가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주소, 연락처) 입력→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청약접수완료→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분 | 청약신청금 | 내용 |
|---|---|---|
| 모든 타입 공통 | 3,000,000원 (금삼백만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 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부산은행 전 지점)**

| 구분 | 구비사항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청약신청서(부산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법인 신청 시 | • 청약신청서(부산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만 가능함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부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을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됨.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함(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하단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2년 01월 14일(금)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추첨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
|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 |
|---|---|
|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분양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부정 당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br>•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소 | 계약금납부 |
|---|---|---|---|
| 2022.01.17(월) | 10:00 ~ 16:00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8)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람.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함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분양대금 관리자) | 비고 |
|---|---|---|---|
| BNK부산은행 | 101-2074-8590-01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예 : "201동 504호" 당첨자 홍길동 → 1-0504홍길동 ] |

• 지정 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계약 시 | - 계약금 입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표초본 1통(거주자 우선 당첨자인 경우)<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 법인 계약 시 | - 계약금 입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1통)<br>※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br>-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분양계약 관련 인지세는 분양계약자의 비용 및 책임하에 납부하도록 하며,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함 또한 전매상속, 증여 등 포함)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분양계약자 및 분양계약자의 분양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협의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어 반환